

▣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1. 입소 정원 및 모집방법

- ① 본 시설의 입소정원은 29명으로 한다.
- ②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한 사이버 홍보와 각 지역별 홍보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계약목적

본 시설은 심신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입소일 기준 장기요양인정서의 종료 날짜로 기재하며 계약은 제17조에 의한 해지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①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월 청구된 금액을 익월 20일까지 시설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입소자의 희망에 따라 받은 개인적 서비스 요금과 시설외의 치료비용(병원비 및 약값)은 입소자가 부담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 ③ 시설의 경우 입소경비는 등급별 공단 수가의 본인부담금과 그 외 비급여를 산정할 수 있다.
- ④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 ⑥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8~12% 적용한다.

1)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첨부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제공 및 부담내역(2025년 수가 기준에 의함)

등 급	1일 비용(수가)
1등급	90,450
2등급	83,910
3등급~5등급	79,240
등급외	70,000

첨부2. 본인부담금 세부항목 (30일기준)

구 분			금액(원)	내 역
일반 대상자	1등급		542,700	1일 90,450원 X 20% X 30일
	2등급		503,460	1일 83,910원 X 20% X 30일
	3등급~5등급		475,440	1일 79,240원 X 20% X 30일
감경 대상자	1등급	12%	325,620	1일 90,450원 X 12% X 30일
		8%	217,080	1일 90,450원 X 8% X 30일
	2등급	12%	302,076	1일 83,910원 X 12% X 30일
		8%	201,384	1일 83,910원 X 8% X 30일
	3등급~ 5등급	12%	285,264	1일 79,240원 X 12% X 30일
		8%	190,176	1일 79,240원 X 8% X 30일
등급외자	등급외	100%	2,100,000	1일 70,000원 X 100% X 30일
비급여	식사재료비		270,000	1식 3,000원 X 3식 X 30일
	간식비		60,000	1일 2,000원 X 30일

	기타병원비	있음	어르신의 병원비, 약 등에 관한 개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총 월 이용료 (일반대상자, 30일 기준)	1등급		이용료 542,700원 + 식비 270,000원 + 간식비 60,000원
	2등급		이용료 503,460원 + 식비 270,000원 + 간식비 60,000원
	3등급~5등급		이용료 475,440원 + 식비 270,000원 + 간식비 60,000원

5.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① 시설은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하며 운영비용의 증감 변동에 따른 비급여를 연 1회 한하여 개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안내(우편, 문자발송 등) 후 변경하며 기본 계약기간 안의 금액 변경은 안내가 이루어졌다면 상호 합의하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 및 본인부담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② 본인 일부부담금의 감면절차 및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다.

6.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권리

1) 입소자의 권리

- 가.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나.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다. 모든 입소자는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라.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마.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받을 권리가 있다.
- 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사.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아.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 가.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나.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다.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라.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의무

1)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가.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나.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입소자의 의무

-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 및 청결 의무
- 다.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마.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신원인수인의 의무

-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나. 입소자의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입소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동시에 퇴소 시 입소자의 신원 인수 책임의 의무가 있다.
- 다.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라.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반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바. 입소자의 사망 시 24시간 이내에 시신을 인수해야 한다. 사망 후 3일까지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시설의 관례상 화장으로 장례를 하며 그 비용은 신원인수인이 부담한다.
- 사. 입소자 면회 시, 다른 입소자들의 수면방해, 휴식방해 등 불편감을 지나치게 유발 시키거나 시설 직원들에게 폭언, 고성, 폭력적 행동으로 불안감을 주거나 케어 업무에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아니 되며 면회 예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7.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 ①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②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③ 입소자의 생활상태 및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 될 때
- ④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 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 ⑤ 월 이용료 또는 기타 입소자가 시설에 납부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시설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 ⑦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서비스의 내용

①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명관리, 이동요양 등

②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 서비스

일상편의 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 서비스)

③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촉탁의사(계약의사) 연계

④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의견 수렴 및 반영

분기별 1회 이상 수급자 또는 보호자 정기 상담, 상기 대면 및 유선 상담으로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요구 및 고충 내용 수렴 및 의견 반영

⑤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지역 대형병원 의료 협약,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지역 어린이집 및 공연단의 시설 행사

9.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입소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 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시설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 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4. 다인 생활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 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② 집중 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 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 관찰과 집중 의료처치를 위하여 전문 의료 서비스(즉시 응급실 이송)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기타 개별적인 집중 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10.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 간호과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 사는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 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복용 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 의사가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 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 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 의료시설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시설의 의사는 한 달에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 상태 점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 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협약 의료시설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 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 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 의료시설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 부담의 치료비는 시설 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 절차
 - 가.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나.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다. 병원 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 절차
 - 가. 응급 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나.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 어르신의 병원 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나 케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11.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입소자가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훼손 및 파손되었을 경우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상황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외로 한다.